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체정보, 비행경력,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「항공안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17463호, 2020. 6. 9. 공포, 2020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,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구류를 신고를 필요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범주를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24조 제2호)
- 나. 해양오염 관측과 방제 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등을 특별감항증명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(안 제26조제1항제2호)
- 다.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한 항공정보 제공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('20.6.9. 공포, '20.12.10. 시행)됨에 따라,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

는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한 근거를 삭제하고,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 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6조제2항제7호, 제5항)

라.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,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26조제6항제7호의2)

마.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, 말소신고,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26조제6항제7호의3)

바. 항행분야 국제표준 연구업무 위탁 근거 마련(안 제26조제10항제4호의3)
정부가 수행하는 항행(공역·비행절차, 항공교통·정보·지도)분야 업무와 관련하여, 국제표준 제·개정 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등 국제기구의 요구자료와 관련 국제회의 의제 등에 대한 연구·분석·관리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호 중 “계류식(繫留式) 기구류”를 “기구류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2호에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헬리콥터(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차. 해양오염 관측 및 방제 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

카. 산림, 관로(管路), 전선(電線)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하는 항공기

제26조제1항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“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,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”을 “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항공기 제작자,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

라. 판매 등을 위한 전시 또는 시장조사에 활용하는 항공기

마.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항공기

제26조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8.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

7의3.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말소신고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말소신고의 최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

제26조제10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법 제78조·제83조·제84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업무, 항공교통업무,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정보·지도업무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(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)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 또는 검토하는 자료 등의 연구·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
별표 5 제2호너목 중 “법 제93조제5항”을 “법 제93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처목 중 “법 제122조제3항”을 “법 제122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커목 중 “법 제123조제2항”을 “법 제123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,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)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「항공사업법」에 따른 항공기대여업·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	제24조(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계류식(繫留式) 기구류</u> (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)	2. <u>기구류</u> -----
3. ~ 9. (생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2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 ----- -----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. 다만,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기에 대한 최초의 특별감항증명은 제외한다. 가. ~ 아.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 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<u>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헬리콥터(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u> 차. <u>해양오염 관측 및 방제 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</u> 카. <u>산림, 관로(管路), 전선(電線)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하는 항공기</u>
<u><신설></u>	3. ~ 49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<삭제></u>
3. ~ 49. (생략) 50.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	3. ~ 49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51.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말소신고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말소신고의 최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	<u><삭제></u>
52. ~ 60. (생략)	52. ~ 60. (현행과 같음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의2. (생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7.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(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,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)	7. ----- -----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 -----
8. ~ 12. (생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,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감항증명(최초의 감항증명만 해당한다)을 위한 검사업무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가. ~ 나. (생략)	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다. 항공기 제작자,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
<신설>	라. 판매 등을 위한 전시 또는 시장조사에 활용하는 항공기
<신설>	마.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항공기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(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)에 관한 업무를 「항공사업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한다.	<삭제>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“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7의2.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

<신 설> 8. ~ 11. (생 략) ⑦ ~ ⑨ (생 략)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항공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. 1. ~ 4의2. (생 략) <신 설>	<u>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</u> 7의3.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<u>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말소신고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말소신고의 최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</u> 8. ~ 11. (현행과 같음) ⑦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 4의3. 법 제78조·제83조·제84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업무, 항공교통업무,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정보·지도업무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(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)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 또는 검토하는 자료 등의 연구·분
--	--

5. (생 략)	<u>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</u> 5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255